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140호
- 다. 제출일자 : 2023. 8. 14.
-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제안사유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존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안전운행기준 등을 심의해왔으나, “시내버스”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의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및 제1조의2)
- 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사항에 마을버스 요금조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 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중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6. 8.~6. 2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¹⁾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동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이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도시교통실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현재 20명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선하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고, 현재 10명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각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으나 위원 구성과 기능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임(각 위원회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 참고)

※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비교

구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구 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현재 20명 위촉)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현재 10명 위촉)
위원장	도시교통실장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 단체 대표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중앙부처, 경찰 등 유관기관 대표 6. 버스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7. 관계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 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2년(연임 가능)

구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1.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7.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0.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11. 시내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기준운송원가 등)

- 또한 각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는 17회 개최하여 11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비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처리안건 4건 중 50%(2건)가 마을버스 원가 산정과 관련되어 있어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안건으로 사료됨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및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개최실적²⁾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개최횟수	17	4	5	3	3	2
	안건수	118	34	39	6	37	2
마을버스 ³⁾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2	-	-	-	2	-
	안건수	4	-	-	-	4	-

2)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및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처리안건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4)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및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개최실적 등을 살펴볼 때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이해되는 면이 있음
-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적용시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정해지는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와 달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시교통실장이 되는 만큼 외부위원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118	34	39	6	37	2
관련 항목	버스정책	15	-	8	5	1	1
	노선조정	94	29	30	-	35	-
	경영합리화*	9	5	1	1	1	1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4	-	-	-	4	-
관련 항목	기준운송원가	2	-	-	-	2	-
	기타사항	2	-	-	-	2	-

* 경영합리화 : 총 9건의 안건 중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 사항이 6건으로 비중이 높음

-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20년 1월 시행(서울특별시 조례 제7322호, '19. 9. 26., 제정, 시행 '20. 1. 1.)하고,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21년 8월 설치됨
-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5)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사무는 서울시장의 사무인 만큼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사항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종속되어 기존의 위상과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위원의 위촉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라. <생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구청장